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유학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 옆에  
동의 없이 촬영된 본인의 사진을 실어  
피해를 입었다(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이○○  
피신청인 : 한국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일보 :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A섹션 9면)

내 용 :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영어학원에서 국제학교 ○○○에 다니는 8학년 여학생 3명을 만났다. (중략) 이들은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30명이 한 반인 학급에서 20명이 한국 학생들이다. 한국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 학교는 재학생이

2,000명까지 늘었고, 현재 이 가운데 45% 정도가 한국 학생들로 채워졌다. (중략) 한국 학생 입학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사립학교 사우스빌의 레미 라게라 입학담당관은 “3년 새 한국 학생들이 3배 정도 늘면서 이제는 정원의 20% 가까이 된다”며 “특히 ELS 과정 대부분은 한국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ELS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4학년 김모(11)양은 “교실이 전부 한국 학생이다 보니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를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학생의 필리핀 행렬이 멈추지 않자 최근엔 필리핀 내 ‘이름 없는’ 사립학교까지 한국 학생 특수를 누리고 있다. (후략)

(기사와 함께 신청인들이 교실에 있는 모습이 나온 사진을 게재)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 : 금 5,000,000원, 이○○ : 금 3,000,000원

**결 정 문**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신

청인들에게 2008년 10월 1일까지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〇〇에게 금 5,000,000원을, 이〇〇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8년 6월 11일자 한국일보 9면에 동남아 조기유학 열풍과 실태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의 일부로서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재 말레이시아에 유학 중인 신청인들이 학교 교실에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기사에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내보내 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2008. 9. 4.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각 금 500만원(신청인 조〇〇)과 금 300만원(신청인 이〇〇)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267)을 하였으며, 2008. 9. 11. 위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

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친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초상을 촬영하고 이를 모자이크 등의 조치 없이 주변에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보도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컨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동남아 조기유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도를 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취지의 보도에 통상적으로 본인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기를 원치 아니하리라는 점, 신청인들이 공적인 존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 배포한 것은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국 학생들이 많아 조기유학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정적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후 하단에 ‘운동 한국 학생들’, ‘한국 학교 교실인지, 외국 학교 교실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등의 설명을 달아 놓아 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들이 이 기사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진 보도와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보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도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실로 인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진 보도의 취지와 경위 및 내용, 신청인들의 나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피신청인이 신청인 친권자들에게 이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심리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올림픽 중계 때문에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정정 - 조정불성립,

반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일자 1면)  
2. 『KBS와 MBC의 ‘공영’ 거부하고 ‘언론’ 포기하기』 제하의 사설 (2008년 8월 4일자 31면)

내 용 : 1. 정부가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 행사의 생중계를 KBS, MBC에 잇달아 제안했으나 두 방송사가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민영방송인 SBS가 이를 생중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4일 오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지휘자 정명훈 씨 지휘로 열리는 서울광장 공연을 비롯해 독도함 선상 연주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연결해 동시 생중계 해야 하는 만큼 네트워크를 갖춘 KBS에 생중계를 제안했으나 KBS는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에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유

사한 이유로 고사해 지역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를 맡게 됐다”며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건국 60주년 행사인 만큼 공영방송이 중계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4일 전야제 행사는 15일 0시 25분 전후에 녹화 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2.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를 수도권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하기로 했다. 생중계를 맡아 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KBS와 MBC는 비슷한 시간에 벌어지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일자 A01면에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에 KBS가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올림픽 방송과 프라임 타임대의 편성조정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

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들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주 문 : 1. 신청인의 반론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9월 26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제 목 :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관련 KBS 반론보도

• 내 용 : 8월 2일자 1면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제하의 기사와 8월 4일자 31면 『“KBS와 MBC의 ‘公營’ 거부하고 ‘言論’ 포기하기”』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KBS가 올림픽 경기 중계와 프라임 타임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전야제와 유사한 내용의 '대한민국 60년 특별 기획 경축음악회'가 8월 15일 방송예정이었기에 편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전야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 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 노조 파업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공장을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외 27명

피신청인 :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정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손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11면)

내 용 : (전략) 기륭전자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2004년 매출 1711억 원,

220억 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은 447억 원으로 급감했고, 269억 원 적자가 났다. 노사 분규 3년 동안 회사가 거덜 난 것이다.

그사이 대주주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세 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네 명이 바뀌었다. 노조는 회사 정문 앞 천막 농성 외에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사무실, 집, 고향을 찾아가 데모를 했다. 지난 5월 구로역과 서울광장 철탑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6월 광화문 도심에서 3보 1배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월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 현재는 연구소와 영업 부문만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70여 명도 희망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 분회장은 전문 노동 운동가 출신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인데도 노동계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데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륭전자 분회를 이끌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IMF 금융위기 당시(1997년) 부도가 났던 ○○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김 씨는 2000년 9월 1일부터 부도난 ○○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155일간 분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다.

김 씨는 2001년 9월 '서울민주노동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김 씨는 2002년 6월 기륭전자의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1000일 넘게 이어져 오던 기륭전자의 노사 분규는 지난 14일 회사 측과 노조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극적인 타결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합의안은 기륭전자 측이 협력회사를 설립하고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 10명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생활비로 농성 중인 노조원에게 월 80만 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됐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륭전자 분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에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이라는 제목으로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으로 인하여 2007년도 매출액이 447억 원으로 급감하고 209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노조원의 파업으로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고, 분회장 김○○ 씨는 부도난 ○○전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고, 8월 14일 극적인 (노사)타결직전에 이르렀으나,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기륭전자(주)의 적자는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과는 상관없는 경영상 이유로 기인한 것이고, 모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생산라인 중 일부는 국내에 사외 하도급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긴 것도 아니며, 분회장 김○○ 씨의 투쟁 경위 또한 위로금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었고, 8월 14일 노사 합의는 신설회사의 지위, 고용보장 기간, 임금, 복직·취업 대상자수, 위로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렬되었다고 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2] 보도문을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보도(토요일과 공휴일 발행 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2>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8월 22일자 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의 이유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고용 및 고용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김○○ 분회장이 2000년 당시 부도난 ○○전자를 상대로 농성한 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서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조선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2 내용 참조> □

###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연목구어’ 식 억지부리기 질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권택기

피신청인 : 매일경제신문사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 보도내용

매일경제 :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자 A6면)

내 용 :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던져둔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본질과 관계없는 판죽걸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악습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본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호통만 쳐대는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의 추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 ‘연목구어’식 억지 부리기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엉뚱한 질의가 눈총을 샀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백용호 공정위원장에게 ‘비싼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 개입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주 업무는 금융감독기관의 소관으로 같은 당 의원들조차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라고 혀를 찼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권 의원은 다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낮게 든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체계를) 바꿔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질의가 이어지는 시간 내내 백 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결국 “신용카드 정책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 업무를 도대체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공정위 측과 조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답을 금감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명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질의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정치면(6면)에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권택기 위원이 ‘연목구어’ 식 억지부리기 국감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추가 현장취재를 해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일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심한’ 또는

‘연목구어’ 식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의 제한된 발언 시간(질의·답변 포함 10분)으로 인해 그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점과 추가 취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 조정성립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10월 13일자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보도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기관 소관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연목구어’ 식 억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감독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대형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영국·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공정거래담당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연목구어’ 식 억지 부리기 국감을 했다는 보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 매일경제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 A11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중 내용 참조>